

춘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나33003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나33003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5. 22 선고 2022가단514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기동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제갈철

변론종결 2024. 9. 5.

판결선고 2024. 10. 10.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5. 22. 선고 2022가단5147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배성준, 판사 허경은